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50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 7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달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용허가의 우선순위(안 제5조)
- 나.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다. 사용료 감면(안 제8조)
- 라. 사용료 등의 반환(안 제9조)
- 마. 위탁관리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연법」 제8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- 1) 성별영향평가 : (원안 동의)
 - 2) 부패영향평가 : (원안 동의)
 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함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관리·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연장”이란 무대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.
2. “사용자”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3. “사용료”란 제3조 각 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시설의 종류)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-11에 있는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(이하 “공연장”이라 한다)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본시설 : 무대
2. 부속시설 : 음향시설, 조명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

제4조(사용허가 및 사용료 선납)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.

-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2. 공연장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3. 그 밖에 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허가의 우선순위) ① 군수는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

1.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
2. 문화·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
3. 군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
4. 그 밖의 경우에는 선순위 신청자

제6조(허가 취소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 2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 3.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4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5.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연장시설을 훼손한 경우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7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 공연장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그 사용료는 [별표]와 같다.

1. 오전 : 08:00부터 12:00까지

2. 오후 : 13:00부터 17:00까지
 3. 야간 : 18:00부터 22:00까지
-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사용료 감면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전액 감면
 - 가.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 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군이 후원하는 행사
2. 반액 감면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
 - 나.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: 전부 반환
2.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: 전부 반환
3. 사용예정일 전 14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전부 반환
4. 사용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: 100분의 50 반환
5.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: 반환하지 아니함

- 제10조(사용자의 설비)**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장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 시 사용자에게 본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연장의 관리·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군수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설비를 철거한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설비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, 사용자가 그 기간까지 그 설비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 후 그 설비에 대하여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그 설비의 보관 및 처분 등의 조치에 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- ⑥ 군수는 제5항의 조치에 따라 취득한 돈 등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면서 사용자가 그를 인수하여 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사용자의 배상책임)**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연장 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,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양도 및 대여금지)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
제13조(위탁 관리·운영) ① 군수는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공연장 관리·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연장 관리·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공연장 관리·운영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사용료

1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기 준	사용료	비 고
오전 (08:00~12:00)	60,000	○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당해 기준사용료의 30%를 가산함 ○ 공연연습 또는 무대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사용허가 시간에서 1시간 초과시 당일 다음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○ 공연준비·철수 등을 위해 23:00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60,000원으로 함 (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)
오후 (13:00~17:00)	90,000	
야간 (18:00~22:00)	150,000	
1일	200,000	

※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한다.

※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.

※ 부가가치세 별도

2. 부속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준	사용료	비 고
조 명	1회	100,000	○ 공연 연습을 위한 조명 및 음향 사용시 당해 기준사용료의 50%로 함 ○ 공연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사용시 조명 사용료는 면제함 ○ 마이크 2대는 기본 사용, 추가 1대 당 5,000원
음 향	1회	80,000	
	1일	150,000	

※ 오전, 오후, 야간을 각 1회로 한다.

※ 1일 사용이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을 모두 사용함을 말한다.

※ 부가가치세 별도

□ 「공연법」 제8조

제8조(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